

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92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1. 11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위원회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,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(제10판)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
「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」(안 제9조)
- 나.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(제10판)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수정
(안 제7조제3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일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- 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※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【붙임 4】
- 바. 입법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○ 입법예고 : 2025. 9. 10. ~ 2025. 9. 30. (20일간)
- 사. 기타 참고사항
 - 1)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 - 2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제2호 중 “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”를 “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호선한다”를 “선출한다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2025년 6월 30일”을 “2030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존속기한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소관 실·국		복 지 국
입	복지정책과장	이 경 숙
안	희망복지팀장	도 근 혜
자	담 당 자 (연락처)	염 민 규 (481-3025)

